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670호 2020. 6. 18.(목)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175호 2020년도 사천시 남일대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 고시 —— 1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774호 죽림2지구, 실안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공람 -----2
- 사천시 공고 제790호 동림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공람 ----- 3
- 사천시 공고 제791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4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786호 사천시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

회 람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670호

사천시 고시 제2020-175호

2020년도 사천시 남일대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 고시

「사천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천시 남일대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 결정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 6. .

사 천 시 장

사천시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수영가능시간)

해수욕장명	개장기간	개장시간(수영가능시간)	비고
남일대 해수욕장	2020.7.10. ~8.23.(45일간)	09:00 ~ 19:00	

끝.

사 천 시 공 보

제670호

사천시 공고 제2020-774호

죽림2지구, 실안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공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죽림2지구, 실안3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사 천 시 장

1. 사 업 명 : 죽림2지구, 실안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2.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
3. 사업완료 필지수 및 면적
 - 죽림2지구 : 28필, 16,071.3㎡
 - 실안3지구 : 120필, 31,331.6㎡
4. 지적확정조서 : 붙임문서 참조
5.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6. 공람장소 : 사천시청 토지관리과
7. 공람 비치서류 : 별도첨부
 - 가.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 나. 지상경계점등록부
 - 다.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8. 문의처: 사천시청 토지관리과 토지재조사팀(☎055-831-2841~2843,2978)

사 천 시 공 보

제670호

사천시 공고 제2020-790호

동림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공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동림1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사 천 시 장

1. 사 업 명 : 동림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2.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
3. 사업완료 필지수 및 면적 : 128필지 54,082.5㎡
4. 지적확정조서 : 붙임문서 참조
5.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6. 공람장소 : 사천시청 토지관리과
7. 공람 비치서류 : 별도첨부
 - 가.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 나. 지상경계점등록부
 - 다.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8. 문의처: 사천시청 토지관리과 토지재조사팀(☎055-831-2841~2843,2978)

사 천 시 공 보

제670호

사천시 공고 제2020-791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에 의한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동법 제24조의2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 6. 18.

사 천 시 장

1. 공고명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0. 6. 18. ~ 2020. 7. 2.(15일간)
3. 공고대상

신청대상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일자	운행정지 사유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59다0752	티볼리	정*근	2020. 06. 11.	2019년 6월부터 거가대교 통행료 23건, 고속도로 통행료 29건, 교통법규 과태료 등의 과태료가 체납되었으나 현재 차량 점유자가 이를 납부할 의사가 없어 운행정지 요청함,

4. 공고내용

-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공고하오니, 차량운행자께서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고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670호

2)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7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동법 제82조(벌칙) 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 사용자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함.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천시 민원교통과 자동차관리팀(055-831-33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670호

사천시 공고 제2020-786호

「사천시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문화예술의 개념이 13종으로 한정되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제약이 있어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영상’을 추가하여 문화예술의 개념을 확대,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문화예술”의 정의에 ‘영상’ 추가(안 제2조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 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670호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청(참조 : 문화체육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710, FAX : 831-6013)

사 천 시 공 보

제670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670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만화를” 을 “만화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에 따른 영상을”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70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u>만화</u>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만화와 「영상진흥기본법」</u> 제2조에 따른 영상을 -----.</p>

사 천 시 공 보

제670호

관 련 법 규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물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